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81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 김도읍・김태흠・안병길

구자근 · 김상훈 · 이헌승

추경호 · 정진석 · 권명호

박덕흠 · 김성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시장경제 여건이 매우 악화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제도나 조세감면 특례를 둠으로써 경영환경이 나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제도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중 납부세액의 감면비율을 각각 인상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감면하고, 소상공인이 2021년 12 월 31일까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 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을 "2021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00분의 5" 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 0"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의5 및 제9호"를 "제4호 의5, 제9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제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	감면) ①
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u>2020년</u> 12월	<u>2021년</u>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	
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	
율을 적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면 비율	2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	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	
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소기업	이 수도권	에서 제1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 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 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 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

100분의 20	
<u></u> 나	
· 	
	100분의
30	
<u></u> 다	
100분의 40	
라	
	100분의
15	
마	
	100분의 20
바	

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 장: 100분의 15

3. (생략)

② ~ ⑤ (생 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 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 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 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 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 12. (생 략) <u><신 설></u>

<u>100</u> 분의 <u>25</u>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레
4호의5, 제9호 및 제13호
 1. ~ 12. (현행과 같음)
1. · 12. (현영과 설름)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사고이이 고그치는 게치 따는
상공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u>하는 것</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